

조제분유 수출유망국

법적규격 조사

-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 -

2017. 9

[목 차]

I. 사우디아라비아	3
1. 생산기준	3
2. 라벨링	4
3. 포장	6
4. 인증정보	6
5. 수입규제	7
II. 캄보디아	10
1. 생산기준	10
2. 라벨링	10
3. 포장	13
4. 인증정보	13
5. 수입규제	13
III. 말레이시아	15
1. 생산기준	15
2. 라벨링	15
3. 포장	19
4. 인증정보	21
5. 수입규제	21
IV. 필리핀	22
1. 생산기준	22
2. 라벨링	22
3. 포장	27
4. 인증정보	27
5. 수입규제	28
V. 홍콩	30
1. 생산기준	30
2. 라벨링	30
3. 포장	32
4. 인증정보	33
5. 수입규제	33
참고. 국가별 모니터링 사이트 목록	34

I. 사우디아라비아

1. 생산기준

□ 걸프협력기구 내 표준화기구(GSO)의 규정에 따름

- 조제분유 생산과 관련하여, 모든 걸프협력기구(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은 공통된 생산기준을 적용함
 - * GCC 회원(6개국) :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 본 생산기준은 「CODEX 72/2011: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를 기초로 하고, 그밖에 EU 집행위원회인 EC 규정,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및 영국의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조제분유 생산기준은 「GSO 2106/2013 (E) Infants Formula」에서 규정

- 액상·분말 타입 조제분유의 생산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주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성분과 식품첨가물에는 글루텐이 포함되면 안 됨
 - 100ml 당 열량은 60Kcal(250KJ)~70Kcal(295KJ)를 준수해야 함
 - 제품 자체와 각 성분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해서는 안 됨
 - 25℃ 이하 온도에서 저장되어야 함
 - 영양소별 100Kcal당 최소/최대 함량치, 식품첨가물별 100ml 당 최대 함량치, 그리고 함유금지 농약성분과 잔류농약 최대 기준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Saudi Arabia FDA)은 모유대체품(조제분유 및 단계별 유아용 조제식)에 대해 아래와 같은 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표 I -1> 모유대체품 생산기준

-
- 대상연령 그룹: 36개월 까지
 - 우유단백질(milk protein) 함유율: 11% 이상
 - 유지방(milk fat) 함유율: 8% 이상
 - 맛이 첨가되면 안 됨(non-flavored, only plain)
-

* 출처: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SFDA)

□ 조제분유 위생요건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식품위생 일반원칙과 함께, 유제품 및 조제분유의 위생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표 I -2〉 조제분유 위생요건

구분	법령
식품위생 일반원칙	「CAC/RCP 1-1969 CAC/RCP 1-1969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유제품 위생규정	「GSO CAC RCP 57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Milk and Milk Products」
조제분유 위생규정	「GSO/CAC/RCP 66: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Powdered Formulae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2. 라벨링

□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정 라벨링 기준

-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식품에 대한 표시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기구 (Saudi Arabian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에서 관리함
- 조제분유 라벨링은 「GSO 2106 /2013 (E) Infants Formula」를 적용해야 함
 - 일반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인 「GSO 9: Labe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 유통기한 규정인 「GSO 150: Expiration Periods of food products」,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인 「GSO/CAC/GL 2: The CODEX Guidelines on Nutrition Labelling」, 그리고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정 라벨링 기준을 준수해야 함

〈표 I -3〉 사우디아라비아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제품명
	1) 라벨 글자와 제품에 적힌 모든 기타정보는 아랍어와 영어를 함께 표기해야 함
	2) 품목명에 'Infant Formula' 라고 명시해야 함
	3) 제품명과 디자인은 다른 유제품과 달라야 함
2	단백질원
	1) 단백질원은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함
3	성분목록
	1) 성분 목록에는 성분의 함유비율별 내림차순으로 명시해야 함
	2)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그룹으로 묶어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필요가 없음
	3) 동물 또는 식물유래 성분과 식품첨가물은 특정 명칭을 밝혀야 함
4	영양기준
	1) 에너지양은 킬로칼로리(kcal)나 킬로줄(kJ)로 나타내야 함
	2)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100g당 또는 100ml 당 함량(g)으로 표시해야 함
	3) 각각의 비타민, 미네랄, 콜린(choline)과 기타 성분들은 100mg 또는 100ml 당 함량을 표시해야 함
	4) 2), 3)의 경우 100Kcal(또는 100KJ)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음
5	유통기한 및 저장방법
	1) 품질유지 기한(The date of minimum durability 또는 best before)은 바코드화 하지 않은 숫자 형태로 '일/월/년' 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함
	2)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있는 제품은 '월' 과 '연도' 만 표시할 수 있음
	3) 식품을 저장하는데 특별한 상태가 필요하다면 그와 관련한 유효기간을 표시해야 함
	4) 가능한 한 저장 지침은 유통기한과 인접한 지점에 표시되어야 함

6	사용정보	<p>1) 조제, 사용, 저장과 조제 후 처리에 대한 내용(‘수유 후 남은 분유는 1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함’ 등)을 담은 지침은 라벨과 제품에 동반된 인쇄물에 표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상형태는 바로 수유 가능하며, 농축액 제품의 경우 수유 전에 인체에 무해한 상태의 물이나, 끓여서 안전한 상태로 된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 분말형태는 물을 넣어 액상형태로 만들어야 함 · 준비와 처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은 우수 위생지침(Good Hygienic Practice, GHP)에 따라야 함 <p>2) 부적절한 제조와 저장 및 사용과 관련, 건강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동반되어야 함</p> <p>3) 용기를 개봉한 후, 제품의 저장과 관련한 지침은 라벨에 나타나거나, 제품에 동반된 인쇄물에 표시되어야 함</p>
7	추가요건	<p>1) 아래와 같은 내용이 라벨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명확한 의미로 쉽게 읽을 수 있게 쓰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portant notice’ 또는 이와 같은 뜻의 문구와 함께 모유 수유 또는 모유의 우수성을 표현할 수 있는 ‘Breast milk is the best food for your baby’ 또는 비슷한 형태의 문장을 삽입해야 함 · 제품 사용요건과 적절한 조제방법에 대한 개별 의료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 · 조제분유가 이상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그래픽,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됨 · ‘모유와 같은(humanized)’, ‘엄마같은(maternalized)’ 또는 비슷한 표현은 금지됨 <p>2) 영유아는 특정 성장과 발달이 적합한 시기부터(6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개별 의료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조제분유와 더불어 보완식품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가 라벨에 나타나야 함</p>
8	필요사항	<p>1)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및 포장 국가 · 기업명 및 (수입식품의 경우) 대리인명 및 주소 ·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 · Shipment number와 Registration number · 제품가격

<그림 1-1> 사우디아라비아 조제분유 라벨 예시



* 출처: <https://saudi.souq.com/sa-en>

3. 포장

□ 수입식품 규정 및 조제분유 포장규격 적용

-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은 GCC의 포장규정인 「GSO 839: Food Packages- Part1. General Requirements」¹⁾, 「Food packages - Part 2: Plastic Package - General Requirements」²⁾ 그리고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기본 포장규격을 적용하고 있음
- 수입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포장재에 대한 실험실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laboratory test)를 제출해야 함
 - 검사는 생산 후, 포장에 사용되기 전 또는 식품과 접촉하기 전의 포장재에 대해 진행되어야 함
 - 증명서는 수출국의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한국의 경우 한국인정기구(KOLAS)³⁾를 통해 인증서 발급 가능
 - 원재료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인증은 1년간 유효함
 - 포장재별 세부 규정은 「FDA Food Packaging Regulation」에서 확인해야 함⁴⁾
- 조제분유 기준인 「GSO 2106/2013 (E) Infants Formula」에 따르면, 제품은 판매되기까지 발생 가능한 모든 환경 하에서, 내용물의 부패 및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함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식품의 위생과 품질을 지킬 수 있는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 액상제품의 경우 완전밀폐 용기에 포장되어야 함
 - 포장 시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음
 - 포장 재료를 포함한 용기들은 안전한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함
 - 액상분유와 같이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유할 수 있도록(ready-to-feed)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 용량별로 분유함유량이 지정되어 있음

4. 인증정보

□ 식품인증 미비

- 조제분유는 할랄 인증이 필수는 아님
- 사우디아라비아는 할랄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고, 비영리적 종교단체인 무슬림세계연맹(Muslim World League)에서 할랄 인증을 관장

1) 식품 포장재료로 사용되는 금속, 유리, 플라스틱, 종이, 박스, 다중섬유, 목재에 대한 규정

2) 플라스틱재료의 화학성분별로 함유가능여부 및 최대함량치 규정

3) 한국인정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https://www.kolas.go.kr/usr/intr/mas/MainUserScrin.do>

4)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식품포장 규정 (http://www.sfda.gov.sa/en/food/circulations/Circulations/announ_food_en.pdf)

-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허용된 방식에 따라 생산 및 유통되고, 무슬림들이 먹는 식품에 부여되는 인증임
- 육류를 제외한 식품은 할랄 인증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은 시장에서 수요가 적음
- 사우디에서 할랄 제품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분유 브랜드인 난(Nan)과 니도(Nido)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도 할랄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있음

5. 수입규제

□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수의학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제출 필수

- 2016년부터 채택한 GCC 수입식품 관리규정에 따르면, 조제분유 수입 시 위생증명서 2부와 수의학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7가지 건강증명서 중 조제분유는 ‘(1) 가공식품’ 및 ‘(3) 우유 및 유제품’ 형태의 2가지 증명서를 구비해야 함
 - 아랍어, 영어, 또는 두 가지 언어를 모두 사용해 발행될 수 있음
 - 위생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으로 발행되어야 함
 - 수출국에서 자체적인 양식으로 발행되는 경우, 규정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의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도 필요함

〈그림 1-2〉 사우디아라비아 건강증명서 (1)번, (3)번

Template No (1) Health Certificate for Export of Processed Food				Template No (3) Health Certificate for Export of (Milk, and Milk Products)			
Health Certificate for Export of Processed Food Products to GCC Countries		الصحة العامة للتصدير الآلية للصناعات في بلد المنشأ المنتج الغذائي		Health Certificate for Export of Milk, and Milk Products to GCC Countries		الصحة العامة للتصدير الآلية للصناعات الغذائية في بلد المنشأ المنتج الحليب ومنتجات الحليب	
1.1	Consignor (Exporter) Name Address	1.2	Certificate Reference No. Date of Issue	1.2	Certificate Reference No. Date of Issue	1.2	Certificate Reference No. Date of Issue
1.4	Consignee (Importer) Name Address	1.3	Competent/Confirming Authority Address	1.3	Competent/Confirming Authority Address	1.3	Competent/Confirming Authority Address
1.5	Producer Name Address	1.3	Country of origin ISO code	1.3	Country of origin ISO code	1.3	Country of origin ISO code
1.6	Border of Entry-Country of Destination	1.8	Country of Destination ISO code	1.3	Country of origin ISO code	1.3	Country of origin ISO code
1.11	Means of transport/conveyance By Air By Sea By Road	1.9	Faciling Evt. (if applicable) Name Address	1.8	Country of Destination ISO code	1.4	Faciling Evt. (if applicable) Name Address
1.12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10	Border of Loading-Country of Dispatch	1.9	Faciling Evt. (if applicable) Name Address	1.4	Faciling Evt. (if applicable) Name Address
1.13	Commodities Certified for Other After Further Process	1.11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10	Border of Loading-Country of Dispatch	1.5	Producer Name Address
1.14	Health Attestations General Attestations Additional Health Attestations (Declarations) if deemed necessary	1.11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11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5	Producer Name Address
1.15	Authorized Officer Name & Position Name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 Official Stamp Date	1.12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12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6	Border of Entry-Country of Destination
		1.13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13	Commodity Identification No. Temperature of Food product Ambient Chilled Frozen	1.6	Border of Entry-Country of Destination

* 출처: GCC Guide For Control On Imported Foods

- 수의학증명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에서 추출한 우유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함

-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걸리지 않았음
-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 사료를 먹이지 않았음

□ 식품무역 사업자로 등록된 수입업자가 제품등록 진행

- 수입업자의 상업등기(Commercial Register)에 식품무역업(food trade)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⁵⁾
- 등록이 완료된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SFDA) 전자계정(E-Account)에도 기업등록을 진행해야 식품 수입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음
-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을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에 등록해야 수입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⁶⁾
 - E-계정이 생성되면, 수입업자는 HS코드, 바코드, 품목코드 및 목록에 있는 성분(영어 및 아랍어), 각 제품의 그림 및 제품 라벨의 사본을 포함한 식품정보를 입력해야 함(제품등록은 무료)
 - 수입업체는 세관 중개인, 창고 위치, 공인 업무담당자를 등록해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다른 수입업체에 의해 제품등록되어있는 경우에도, 수입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을 등록해야 함
 - 제품 혹은 라벨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제품 등록을 다시 해야 함

□ 수입통관 규정

- 통관은 관세청(Saudi Arabian Department of Customs, SADC)이 담당하고 있음
 - 관세청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무작위로 샘플을 선정해 수입물품 검사를 진행함
- 수입식품 검사는 국경검역소(Border Inspection Port, BIP)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의 수입식품관리사무국(Executive Department of Imported Food Control, EDIFC)이 진행하는데, 검사 후 수입 여부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함⁷⁾

<표 I -4> 수입식품 검사과정

- 1) 서류검사(Documentary Check): 화물과 관련한 모든 증명서와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함
- 2) 품목검사(Identity Check): 화물이 서류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사함
- 3) 물리적 조사(Physical Examination): 기술규정 기준, 라벨링 표준을 준수하였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컨테이너의 내부 온도와 제품 등을 체크함
- 4) 실험실 검사(Laboratory Testing): 최종 수입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 공인 실험실에서 분석을 진행함

5)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 사업자등록 (<https://frcs.sfda.gov.sa/Account/RegisterAccount.aspx>)

6) 2016 할랄식품 시장동향(사우디아라비아편), 농림축산식품부

7)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프로세스

(https://www.sfda.gov.sa/en/food/about/administration/mangement_food/Pages/EDOIFC-InspectionOffFoodRecievedThroughPorts.aspx)

- 수입식품 검사 결과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최종 통관을 위해 세관에 자료를 이관하고, 기준 미달 식품은 수입이 거부됨
- 수입이 거부될 경우, 현지 수입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본부에 서면으로 항소하여 검사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II. 캄보디아

1. 생산기준

□ 별도 생산기준이 없으며, CODEX 기준 적용

- 24개월 미만 유아용 식품판매를 규정하는 「Sub-Decree No. 133 on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에 따르면, 영유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분류되며, 조제분유는 생후 6개월까지 수유할 수 있는 모유 대체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법규에서는 조제분유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standard)에 따라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별도의 영양기준을 설정하지 않아도 CODEX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면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함
 - 조제분유의 CODEX 기준 「CODEX STAN 72: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에서는 조제분유 및 영유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영양소 함량 등을 규정

2. 라벨링

□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 및 어린이 식품규정 적용

- 일반식품의 라벨링은 「Prakas No. 1045 ISC CS001-2000: Labeling of Food Product」 규정에 따라야 함

<표 II -1> 캄보디아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식품명	1) 식품표준에 명칭이 정해져 있으면, 그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2) 그렇지 않으면, 국내 법령에 규정된 명칭을 사용해야 함 3) 공통적이거나 통상적인 명칭 이외의 새로운 명칭은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함 4)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시에는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음 5)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있거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의 경우, 식품명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단어나 문구를 넣을 수 있음 · 식품의 본질과 물리적 상태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야 함 6) 필요한 경우 건조, 농축, 조제, 훈제와 같이 제품의 특수한 물리적 상태를 명시해야 함 7) 제품명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문자 크기는 라벨이 될 용지나 표면의 크기에 적합해야 함

2	상표	1) 상표는 소비자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고, 제품별로 상이하게 나타나야 함 2) 상표 사용은 관계기관의 규칙에 따라야 함
3	성분목록	1) 단일성분의 식품을 제외하고, 성분 목록은 무게(m/m), 부피(v/v), 비율(%)의 내림차순으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함 2) 화합물과 같이 2종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인 경우, 성분 바로 옆 괄호 안에 비율별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 3) 첨가된 모든 비타민 또는 미네랄은 성분 목록에 명시되어야 함 4) 아래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은 성분 목록에 성분을 명시해야 함 · 염화나트륨/소금, 질산나트륨, 나트륨/질산칼륨, 글루탐산나트륨/MSG, 비영양(non-nutritive) 감미료의 특정 명칭 5)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첨가된 물도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야 함 (제조과정 중 증발된 물 및 휘발성 성분은 표시할 필요가 없음) 6) 다음의 성분은 표시 불필요 · 가공 보조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향과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색을 부여하는 첨가물(색소)
4	내용량 및 중량	1) 액체식품은 리터(l) 또는 밀리리터(ml)와 같은 부피 단위로 표시함 2) 고체 식품은 킬로그램(kg) 또는 밀리그램(mg)과 같은 무게 단위로 표시함 3) 반고체 또는 점성 식품은 중량 단위나 부피 단위 중 하나로 표시함
5	기업명 및 주소	제조업자, 포장업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이름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6	원산국	1) 식품의 공급원 또는 원산지는, 소비자가 식품 원산지의 공급원이나 위치를 오도하거나 속이지 않도록 표시해야 함 2) 식품이 제2국에서 가공되어 식품의 성질이 변경될 경우, 라벨에 그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음
7	로트 번호	각 식품은 라벨이나 포장에, 생산제품 식별용 코드번호와 로트번호를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함(생산자 책임부여 및 관리당국의 용이한 감시를 위함)
8	유통기한 및 보관 지침	1) 제한된 내구성 내에서 향, 색, 맛, 품질,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최소 저장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제품의 경우 ‘일/월’로 표시 · 최소 저장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월/년’으로 표시 2) 날짜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야 함 · The production date(the day of the product being produced) · The packaging date(the day of the product being packaged) · The expiry date (the day of the product expired) · Best before or best before end (the day of minimum durability) 3) ‘일, 월, 연’은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숫자 순서로 표시해야 함(월은 문자로 표시 가능) 4)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을 별도로 제시함(채소, 과일, 식초 등) 5) 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보관 조건이 있으면 라벨에 표시해야 함
	필수요건	1) 식품명과 함량은 눈에 띄는 위치에 동일한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현지 생산제품은 반드시 크메르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 불어, 중국어 등 추가 외국어의 사용은 가능하나, 문자 크기는 크메르어보다 작아야 함 · 수입식품의 경우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크메르어로 라벨을 적거나 부착해야 하며, 크메르어로 작성된 필수정보는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함 3) 제품 라벨링 금지사항 · 사용자가 제품을 혼동하게 만드는 내용 · 제품의 내용물과 무게를 혼동하게 만드는 내용 · 관계기관이 승인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을 최고라고 표현하는 내용 · 미네랄위터를 제외하고, 식품을 질병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 둔갑시키는 내용

- 어린이용 식품규정인 「Sub-Decree No. 133 on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 에 조제분유 라벨링 유의사항이 있음

〈표 II -2〉 캄보디아 조제분유 라벨링 유의사항

항목	세부 규정
유의사항	1) 용기 자체 또는 제품 용기에 부착된 라벨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2) 생후 6개월 동안에는 모유만 수유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과, 만 2세 또는 그 이상까지 모유 수유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함
	3) 조제순서, 수유, 조제방법과 관련한 지침이 있어야 함
	4)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Important Notice’ 와 함께 표시해야 함
	5) 권장 연령 이전에 수유하는 것에 대한 건강상 위험성과 의료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있어야 함
	6) 컵(cup) 수유가 젖병(bottle) 수유보다 더 위생적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
	7) 모유를 대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문구 및 그와 유사한 문구는 금지됨
	8) 조제방법을 제시하는 것 이외의 다른 사진, 그림, 그래픽 사용을 금지함
	9) 첫 6개월 동안 수유에 들어가는 총 비용을 나타내는 문구를 표시해야 함
	10) 모든 영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유사제품의 경우, 영유아가 섭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경고문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그림 II -1〉 캄보디아 조제분유 라벨 예시



* 출처: www.babylovemart.com

3. 포장

□ 조제분유 포장규정 미비

- 구체적인 식품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식품안전법과 식품위생법은 생산시설, 검사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식품에 사용가능한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제분유 포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이 없음

4. 인증정보

□ 식품인증 미비

- 캄보디아 표준협회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만 ISC(Industrial Standards of Cambodia) 인증이 적용됨
- 식품 부문에서는 칠리소스(Chili Sauce)와 식초(Vinegar)에 대한 생산기준을 마련하여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음

5. 수입규제

□ 위생증명서 발급 및 사전 검사 필요

- 조제분유는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에 해당되지 않음⁸⁾
- 조제분유를 포함한 모든 식품은 해당 수입식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입 전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함
 - 식품위생법 「Sub-Decree No. 002 on Food Hygiene」에 따라 식품의약품부 산하의 식품안전국(FSB, Food Safety Bureau)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표 II -3〉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

-
- 상무부(MoC)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 산업수공업부(MIH)에서 발급한 제조업 등록증
 - 특허증
 - 최종 제품의 성분 설명서
 - GMP, GHP, HACCP 인증서
 - (수입제품의 경우)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 샘플 3종
 - 기타 제품에 관련한 서류
-

8) 수입 금지 및 제한품목 규정 「Sub-Decree No. 209 on the Enforcement of the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Goods」에 해당되지 않음

- 식품은 도착 전 검사(Pre-Arrival Assessment) 대상으로, 조제분유도 이에 해당됨
 - 상무부(MoC) 산하의 수출입물품 검사기관인 캄컨트롤(Camcontrol)이 도착 전 평가를 담당함
 - 수입업자는 프놈펜에 위치한 캄컨트롤 본사에 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을 증빙하는 관련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이 완료되면 캄컨트롤의 ‘도장이 날인된 신청서(Stamped Application Form)’가 발급되며, 제품 도착 시 국경의 캄컨트롤 지역사무소에 해당 승인서를 제출해야 물품검사가 진행됨

□ 수입통관 규정

- 통관수속의 간소화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ASYCUDA World)과 새로운 통관신고서인 단일관리서류(SAD)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 이에 따라 SAD는 온라인으로 접수 및 통보가 이루어지며, 통관 시 요구되는 서류(송장, 선하증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 ASYCUDA에서 수입허가(Import Permission) 통지가 나오면, 이에 근거해 산출된 관세를 지불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수입식품의 경우(조제분유 포함) 세관과 캄컨트롤이 공동으로 보세창고에서 제품의 품질 및 수량 검열을 실시해 선적서류와의 일치여부 및 관세 납부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며, ASYCUDA를 통해 결과가 통지됨
 - 캄컨트롤은 특히 유아용식품 규정 「Sub-Decree No. 133 on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의 부칙인 「Prakas No. 061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Sub-decree of the Marketing of Infant and Child Feeding Products」에 따라 수입 조제분유의 라벨 검사를 실시함
 - 또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규정 「Prakas No. 335 Products Expiry Date」을 별도로 마련하여 캄보디아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사하고 있음
- 「Prakas No. 329 on Measures Against Food Products」에 따라 캄컨트롤은 라벨이 없거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한 경우, 또는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식품을 발견할 경우에 해당 식품을 압류하여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 할 수 있음

III. 말레이시아

1. 생산기준

□ 조제분유 생산규격은 식품규정 「Food Regulations 1985」 적용

- 본 규정은 말레이시아 식품법 「Food Act 1983」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라벨링·식품첨가물 허용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식품규정 제8조 ‘식품별 기준 및 특정라벨링 요구사항’에 따르면, 조제분유는 특수목적용 식품(Special Purpose Food)으로 분류하고 있음
 - 본 식품류는 감독청(Director)의 서면승인 없이 수입, 제조, 홍보, 판매가 금지됨
 - 본 분류에서 의미하는 영유아(infant)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유아를 뜻함
- 조제분유는 모유의 대안으로서, 영유아에게 수유할 수 있는 식품으로 설명되거나 판매되어야 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젖소나 기타 동물에서 추출한 우유, 기타 먹을 수 있는 동물성분(생선 포함)을 포함하거나, 이들 모두 포함된 제품 또는 유아에게 수유하기 적합한 식물성분을 포함한 제품이어야 함
 - 조제분유 자체 또는 구성 성분에 대해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함
 - 최소 허용치와 최대 허용치 규정을 준수하여 영양성분을 구성해야 함
 - * 동 법규 별첨문서 21번 ‘조제분유 영양성분표’ 및 ‘추가가능 성분 기준표’ 참고
 - 식품첨가물은 허용된 것 이외의 물질은 금지되고 있음
 - * 동 법규 별첨문서 21번 ‘조제분유 함유허용 식품첨가물’ 참고
 - 이눌린(Inulin)과 올리고플럭토오스(Oligofructose, Fructo-olifosaccharide)를 제외한 영양보충 성분은 포함될 수 있음
 - * 동 법규 별첨문서 12번 ‘허용된 영양보충성분’ 리스트 참고
- 조제분유의 미생물 함유기준(균류 포함)은 식품규정 제7조 ‘부수적 구성요소’에 따르며, 다른 식품보다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함
 - * 동 법규 별첨문서 15번 ‘미생물 기준’ 및 ‘균류 오염기준’ 참고

2. 라벨링

□ 조제분유는 특수 라벨링 규정을 우선 적용

- 라벨링 규정은 「Food Regulations 1985 - PARTIV Labelling」에 명시되어 있음
 - 조제분유의 경우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에 준하는데, 적용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수 라벨링 규정을 우선으로 함

<표 III-1> 말레이시아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일반 요건	1) 아래 경우의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됨 ·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라벨 · 금지된 사항을 표시한 라벨 · 규정된 위치나 방법으로 작성되지 않은 라벨
2	언어	1) 식품규정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언어규정에 따름 ·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제조, 포장된 식품은 말레이어를 사용 · 수입식품의 경우 말레이어나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번역된 타언어를 병기할 수 있음
3	필수 표시사항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나열된 항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함 2) 식품의 적절한 명칭 또는 주원료의 일반명칭을 포함하는 식품을 표시해야 함 3) 물, 식품첨가물, 영양보충물을 제외하고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은 각 성분의 적절한 명칭을 사용해 중량비율별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하며, (특별규정이 있으면) 비율을 표시할 수 있음 4) 식품첨가물을 함유했을 경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contains permitted (식품첨가물 종류)’ 로 표시해야 함 5) 비타민, 미네랄, 필수아미노산 또는 필수지방산을 함유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해야 함 · 비타민: 각 종류별 함량(mg 또는 µg) · 미네랄위터 : 각 종류별 함유율(%) 또는 함량(mg) · 필수아미노산: 각 종류별 함량(mg) · 필수지방산: 각 종류별 함유율(%) 또는 함량(mg) 6)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사 또는 포장업체, 이들 기업의 소유권자 또는 대리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원산지지를 표시해야 함 · 우편번호, 우체국 주소 등을 표시해도 됨 · 포장 봉인을 위해 사용되는 디스크, 캡, 기타 장치에 표시될 경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도 됨 7)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및 최소 사용가능한 기한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날짜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영아용 분유의 판매 및 광고 등을 할 수 없음 · 포장 및 라벨 또는 기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제품 식별을 위해 사용하는 코드형태의 날짜표시는 인정되지 않음 · 표시형태 예시: ‘EXPIRY DATE’, ‘USE BY’, ‘CONSUME BY’, ‘BEST BEFORE’ · 반드시 권장 보관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함 8) 영양표시 · 에너지량은 Kcal, KJ로 표기해야 하며, 1인분인 경우 100g 또는 100ml 당 열량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여러 번 섭취가능한 식품인 경우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 단백질, 탄수화물(식이성 섬유 제외), 지방은 100g 또는 100ml 당 열량으로 표기하거나 또는 여러 번 섭취가 능한 식품인 경우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표시함
4	유의사항	1) 함유하고 있는 성분 또는 식품첨가물이 동물성인 경우, 유래한 동물의 일반명칭도 라벨에 표시해야 함 · 식품첨가물의 명칭으로 유래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됨

5	형태 및 방식	1) 필수 표시사항은 눈에 잘 띄도록 나타내야 함
		2) 제품명칭(위 항목 3-2)은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항목과 비교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해야 함 (육류 함유 및 알코올 함유 표시는 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3)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된 모든 사항들은 10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포장에 부착되거나 표현된 다른 항목들과 동등하게 눈에 띄어야 함
		4) 필수 표시사항 중 구성성분, 비타민/미네랄 등의 함유, 식품첨가물, 업체정보는 4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작성할 수 있음(위 항목 3-3, 4, 5, 6)
		5) 라벨은 포장재 자체에 또는 단단하게 또는 영구적으로 포장에 부착된 곳에, 이해하기 쉽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표시되어야 함
		6) 라벨부착에 대한 규정이 바로 상단에 존재하지만, 다음의 경우 포장 안 쪽에 부착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명한 용기에 포장된 경우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아닌 경우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식품 자체의 껍질 또는 포장지 등으로 동봉되어 있어 라벨이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경우
		7) 별도의 포장지에는 라벨이 표시되지 않아야 함
6	글자크기 및 색상	1) 라벨에 사용되는 글자의 최소 포인트가 규정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모든 글자 중 소문자의 높이를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등 포인트로 쓰인 소문자 크기에 관계없이 대문자의 높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
		2) 이 규정에서 정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게 및 부피의 단위기호를 제외하고, 모든 단어 및 문구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함 (제품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모든 단어 및 문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대문자 표시 또는 모두 소문자 표시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소문자 표시
		3)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모든 단어 및 문구를 표시하기에 표시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더 작은 크기의 글자가 사용될 수 있으나 최소한 2포인트 보다 커야함
		4) 모든 글자는 글자가 표시된 배경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함
7	성분기준 문구	1) 성분의 강도, 무게, 수량에 대한 기준을 표시할 때 따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백분율, 백만분율, 10억분율은 무게당 함유량을 의미함
8	표시금지	1) 관련당국의 허가, 등록 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등급, 품질, 우월성을 나타내는 의미의 단어는 식품포장 라벨에 사용할 수 없음
		2) “순수한”, “합성”, “약용”, “강장”, “건강” 및 동일한 의미의 단어는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라벨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명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 조제분유와 관계없는 식품류의 필수 표시 규정은 본 보고서에서 제외함 (혼합된(mixed) 식품, 육류함유 식품, 알코올함유 식품, 식용유지 및 식용유함유 식품 자국제조식품 규정 등)

<표 III-2> 말레이시아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특수목적용 식품 (조제분유 포함)	<p>1) 식품첨가물을 제외하고 식물성 성분이 포함되었다면, 라벨에 식물의 일반명칭을 기재해야 함(성분 자체로 유추할 수 있다면 해당되지 않음)</p> <p>2) 제10항(라벨링 언어규정)*이 있으나 조제분유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모든 사항은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을 포함하는 것은 허용함</p> <p>* 본 규정에는 “수입식품의 경우 말레이어 또는 영어를 사용해도 되며, 번역된 기타 언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고 명시</p>

<p>조제분유</p>	<p>1) 라벨의 눈에 띄는 부분에 최소 10포인트 이상으로 모유가 영유아에게 가장 좋은 음식임을 알리는 문구를 삽입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TIC PENTING: SUSU IBU ADALAH MAKANAN YANG TERBAIK BAGI BAYI (IMPORTANT NOTICE: BREAST MILK IS THE BEST FOOD FOR INFANTS)
	<p>2) 제품의 식별 및 배치(positioning)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벨에 영유아 또는 아기 또는 이들 신체 일부가 들어간 사진을 사용할 수 없음. 그래픽은 사용 가능함</p>
	<p>3) 라벨에 모유보다 조제분유가 우수하다는 표현은 금지됨</p>
	<p>4) 4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로 아래 항목을 작성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탄수화물 • 에너지 값(kcal, kJ 또는 두 개의 단위 모두 사용 가능) • 100g 당 함유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양 • 권장소비량
	<p>5) 영유아용 특수조제분유의 경우, 제품을 사용가능한 특수요건, 식이와 관련한 특징 및 제품 속성에 대한 상세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함</p>
	<p>6) 철분(Fe)이 100칼로리 당 최소1mg 이상 함유되지 않았다면, 'formula bayi dengan besi(infant formula with iron)' 이란 문구는 표시가 금지됨</p>
	<p>7) 제26항 7호* 규정에도 있지만 조제분유에 '풍부한(enriched)' 또는 '비타민이 강화된(vitaminized)' 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p> <p>* 본 규정에는 어떠한 식품에도 풍부함, 비타민이 강화된, '첨가된(fortified)', '보완된(supplemented)', '강화된(strengthened)' 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와 같은 의미이거나 그렇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음</p>
	<p>8) 조제분유 라벨에는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준비 방법: 유아에게 수유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수량이나 수유량에 대한 내용 • 1회에 수유할 수 있는 조제량, 하루 수유 횟수와 그만큼의 양, 향후 최대 6개월 까지 매일 수유해야 하는 분량 • 개봉 전과 후 분유를 보관하는 방법, 분유저장에 대한 지침 및 정보 • 적어도 4포인트 이상의 글자로 'RUMUSAN BAYI BUKANLAH MAKANAN TUNGGAL BAGI BAYI YANG BERUMUR LEBIH DARIPADA 6 BULAN (INFANT FORMULA IS NOT THE ONLY FOOD FOR INFANTS OVER 6 MONTHS OF AGE)' 라는 문구를 넣어야 함

<그림 III-1> 말레이시아 조제분유 라벨 예시



MAKLUMAT PEMAKANAN / NUTRITION INFORMATION			
Purata Komposisi / Average Composition	Setiap Per 100g	Setiap Per 100ml / kcal	Setiap Hidangan / Per Serving 100ml
Tenaga / Energy	kcal / Kcal	514.00	67
Lemak / Fat	g	25.4	3.4
Yang terdiri daripada / Comprising of			
-Asid Lemak Monosaturat / Monounsaturated Fatty Acid	g	9.5	1.2
-Asid Lemak Polisaturat / Polyunsaturated Fatty Acid	g	4.8	0.6
-Asid Lemak Tepu / Saturated Fatty Acid	g	10.1	1.3
-Asid Trans Lemak / Trans Fatty Acid	g	0.2	0.0
-Asid Asidoleik / Oleic Acid (ARA)	mg	50	6.5
-Asid Linoleik / Linoleic Acid (Omega 6)	g	4.0	0.5
-Asid α-Linolenik /α-Linolenic Acid (Omega 3)	mg	515	67
Protein	g	10.8	1.4
Karbohidrat / Carbohydrate	g	58.3	7.5
Natrium / Sodium	mg	215	28
Kalium / Potassium	mg	540	70
Klorida / Chloride	mg	400	52
Kalsium / Calcium	mg	310	40
Fosforus / Phosphorus	mg	170	22
Magnesium	mg	63	8
Mangan / Manganese	µg	90	12
Selenium	µg	11	2
Vitamin E	µg RE	483	64
Vitamin D	µg	6.4	1
Vitamin C	mg	7.0	1
Vitamin K	µg	37	5
Vitamin B1	mg	70.0	9
Vitamin B2	mg	0.5	0.1
Vitamin B3	mg	1.0	0.1
Vitamin B5	mg	0.3	0.0
Vitamin B6	mg	0.3	0.0
Vitamin B12	µg	8.2	1.1
Asid Folic / Folic Acid	µg	30.0	4
Asid Panthotik / Pantothenic Acid (Vitamin B5)	mg	0.1	0.0
Vitamin B12	µg	0.2	0.0
Biotin	µg	44.0	5.8
Kolin / Choline	mg	55.0	7.2
Inositol	mg	44.0	5.8
Taurine	mg	29	4
Karnitin / Carnitine	mg	2	0.3
Zat Besi / Iron	mg	5.2	0.7
Iodin / Iodine	µg	30	4
Kuprum / Copper	µg	0.4	0.1
Zink / Zinc	mg	5.1	0.7

Kandungan Kultur Lactobacillus hidup / Viable Lactobacillus culture count 10⁷ cfu/g
 Saiz perolehan / Serving size: 4.5g
 Setiap hidangan / Per serving 100ml = 13.2g susu rumusan / formula milk + 90ml air / water

* 출처: <http://www.lazada.com.my>

3. 포장

□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름

- 포장 규정은 「Food Regulations 1985 - PARTVI Packages for Foods」에 명시되어 있으며, 조제분유는 특수목적 식품으로 분류되어 식품 포장재의 금속오염물질 최대 허용치가 규정되어 있음

〈표 III-3〉 말레이시아 일반식품 포장규정

1) 유해한 포장의 사용금지

: 이 규정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유해물 및 기타 오염된 물질을 생성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모든 포장재·용기·컨테이너·기구(포장재 등)를 수입, 제조, 판매목적의 광고, 매매, 사용 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됨

2) 식품 포장재의 안전성

: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준비, 포장, 저장, 운송할 때 아래의 포장재 등을 수입, 제조, 판매목적의 광고 또는 매매해서는 안 됨

- 비소, 납 등 6가지의 금속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함유하여 이를 식품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포장재
- 유약을 입힌 토기 재질로 산성에 견디는 성질이 없는 포장재

※ 조제분유의 경우 금속오염물질 최대허용치가 아래와 같이 지정되어 있음

〈표 III-4〉 금속 오염물질의 최대허용치

(단위: mg/kg)

구분	금속 오염물질					
	비소	납	주석	수은	카드뮴	안티모니
조제분유	0.1	0.5	40	0.05	1	1

* 출처: Malaysia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3) 염화비닐 단량체를 과도하게 함유한 폴리염화비닐의 사용 금지

: 염화비닐 단량체를 1mg/kg 이상 포함한 폴리염화비닐로 만들어진 경질 또는 반경질의 포장재 등을 수입, 제조, 판매목적의 광고, 매매, 사용해서는 안 됨

4) 폴리염화비닐로 식품을 포장하는 경우, 해당식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염화비닐단량체가 검출되어서는 안 됨

: 폴리염화비닐로 만들어진 경질 또는 반경질의 포장재 등으로 포장된 식품이 염화비닐 단량체를 0.05mg/kg 이상 함유하는 경우, 그 식품을 수입, 판매목적의 광고 및 준비 또는 매매해서는 안 됨

5) 식품이 아닌 제품(Non-Food Product)을 위한 포장 사용 금지

: 식품이 아닌 제품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고안된 포장재를 식품의 준비, 포장, 저장, 운송 또는 판매목적의 게시를 위해 사용 또는 사용 허가해서는 안 됨

6) 포장 재사용 금지

: 다음 식품의 준비, 포장, 보관, 판매목적의 게시를 위해 규정된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사용허가 해서는 안 됨

- 설탕, 밀가루: 사용된 적 있는 자루
- 식용 유지, 식용유: 사용된 적 있는 병 또는 금속용기 (사일로 및 유조선 제외)
- 非돼지유래(Non-swine origin) 식품: 돼지 또는 멧돼지 유래 제품에 사용된 적 있는 모든 포장재
- 모든 식품(여분의 싸개(Wrapper)로 포장된 것 제외): 사용된 적 있는 플라스틱 병
- 모든 식품(주류 및 샌디⁹⁾ 제외): 주류 및 샌디 제품에 사용된 적 있는 병

: 천연미네랄워터에 사용된 적 있는 20L 이상의 폴리카보네이트 용기는 동일한 목적으로 재사용 가능함

7) 유사제품의 포장 재사용

- : 이 규정의 7A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다음 식품의 준비, 포장, 보관, 판매목적의 게시를 위해 규정된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됨
 - 우유, 탄산음료, 주류, 샌디: 다른 식품포장에 사용된 적 있는 병
 - 야채, 과일, 생선: 다른 식품포장에 사용된 적 있는 상자 또는 나무상자(Crate)
 - 도정미: 다른 식품 포장에 사용된 적 있는 마대자루(Gunnysack)

7A) 주류, 샌디, 야채 및 과일을 위한 포장

- : 아래와 같은 경우 사용된 적 있는 포장재 재사용이 가능함
 - 주류포장에 사용된 적 있는 병은 샌디 포장에 사용될 수 있음
 - 야채포장을 위해 사용된 적 있는 상자 또는 나무상자는 과일 포장에 사용될 수 있음

8) 모든 포장재의 사용에 관한 추정

- : 이 규정의 6, 7규정의 목적상, 식품을 담고 있는 포장재 등에 다른 식품의 표식이나 라벨이 있는 경우, 해당 포장재는 그러한 표식 또는 라벨이 나타내는 특정 식품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간주됨

9) 손상된 포장 재사용 금지

- : 누구도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손상이 있는(damaged)’ 상태의 포장재 등을 수입, 판매목적의 광고 또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됨
 - 포장재의 완전성 및 제품의 건전성 또는 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벗겨짐이나 왜곡된 것
 - 천공, 부식, 누출 또는 이들이 조합된 것

10) 장난감, 동전 등 유사물질이 함께 포장되어서는 안 됨

- : 판매용 식품 또는 그러한 목적의 포장에는 아래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장난감, 동전, 기타 유사한 물질이 함께 포장되어서는 안 됨
 - 섭취하는 식품의 권장량을 측정하기 위한 물품(살균된 것으로 한정)
 - 내포장 가능하도록 규정된 라벨
 - 산소를 흡수할 목적으로 포함된 환원철(Iron, reduced) 분말 또는 유사한 기타 주머니

11) 환원철 분말

- : 환원철 분말은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흡수된 산소가 식품으로 이동되지 못하도록 주머니에 동봉되어야 함
- : 환원철 분말 또는 유사한 항주머니가 식품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경우, 주머니와 그 라벨 자체는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흡수된 산소가 식품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재료로 구성되어야 함
- : 환원철 분말의 주머니에는 염화칼슘, 수산화칼슘, 활성탄(carbon, activated), 석고, 산화철, 수산화 마그네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소금, 활석(talc), 물, 비석 또는 이들 중 둘 이상이 포함될 수 있음
- : 환원철 분말 주머니에는 아래의 문구 또는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산소 흡수제(OXYGEN ABSORBER)
 - 철분 분말 포함. 먹지 마시오(CONTAINS IRON POWDER, DO NOT EAT CONTENTS)

○ 소매점 판매 물품의 경우 포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됨

<표 III-5> 소매 판매 포장규정

1) 식품이 포장되어 소매점에서 진열되고 고객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게시 및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 모든 식품은 단단히 밀봉되어 있어야 함
- 투명하고 유연한 재료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라벨링은 그 세부사항에 따라 포장 내에 삽입될 수 있음

2) 포장은 다음의 경우 밀봉된 것으로 간주

-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열 또는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밀봉되어 있어야 함
- 종이 포장의 경우 포장의 입구는 접혀져 있으며, 테이프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함

9) 샌디(Shandy): 맥주와 레모네이드를 섞어 만든 음료

4. 인증정보

□ 식품인증 미비

- 조제분유의 경우 말레이시아가 공인하는 자킴(JAKIM) 할랄인증이 필수는 아님
 - 말레이시아의 국교는 이슬람교로, 이슬람 소비자들은 식품 소비 시 할랄 인증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육류를 제외한 식품은 할랄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님
 -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판매 중인 주요 영유아 조제분유 브랜드(네슬레, 듀팩스, 미드존슨 등)의 제품은 모두 할랄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5. 수입규제

□ 식품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

- 수입신고 및 관련서류 제출과는 별도로, 식품 수출업체는 자신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로 반입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FOSIM)에 수출업체로 등록해야 함
 - 「식품법 1983(Food Act 1983)」에 부합하는 안전성이 보증된 식품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해당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은 반송될 수 있음

□ 수입통관 규정

- 재무부 산하의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에서 통관 및 관세 부과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
 - 조제분유는 「동물법 1962의 규칙 제8조(Section 8 of Animal Rules 1962)」에 의해 우유 및 유제품에 해당되는 수입규정을 적용받음
- 다강네트(Dagang Net)를 통한 전자신고 가능
 - 다강네트란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 서비스로, 수출입자들이 전자통관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 www.Dagangnet.com
- 유제품은 조건부 수입 품목에 해당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품목은 「관세법(Customs Act) 1967」, 「관세(수입금지)시행령(Customs (Prohibition of Import) Orders) 1998」에 따라 수입금지, 수입제한, 조건부 수입가능, 한시적 수입제한 등 4가지로 구분됨
 - 유제품은 수의국(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의 동물건강증명서(Veterinary Health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수입이 허가되는 조건부 수입 대상에 해당
 - 수입허가(Import permit) 취득은 말레이시아 기업만 가능함

IV. 필리핀

1. 생산기준

□ 조제분유의 생산기준은 국제식품규격 적용

- 모유 대체품(Breastmilk substitutes) 및 보충물에 대한 마케팅과 유통을 규제하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 51(Milk Code)」에 따르면, 영유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조제분유는 생후 4~6개월까지의 유아가 섭취할 수 있는 모유 대체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 법규는 유아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제분유의 생산·판매·유통에 있어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standard)에서 권고한 생산기준과 「Codex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oods for Infants and Children」을 적용하고 있음¹⁰⁾
 - 별도의 영양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CODEX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이면 유통이 가능함

□ 조제분유의 식품첨가물 함유기준

- 식품별, 첨가물별 함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 식약청이 규정한 「Bureau Circular No.2006-016」에 조제분유에 사용가능한 첨가물과 최대 함유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미생물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준수

- 「Bureau Circular No. 01-A s. 2004」에 조제분유에 대한 미생물 함유치가 제시되어 있음

2. 라벨링

□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특정 라벨링 규정에 따름

- 「Executive Order NO. 51」에서 조제분유 라벨링에 대한 기본 틀을 잡은 이후 2006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라벨링 규정을 일부 수정·구체화하였음¹¹⁾
 - 명확하고 눈에 잘 띄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가 개별 용기에 인쇄되거나 라벨로 부착되어야 하며, 라벨부착의 경우 쉽게 분리되지 않아야 함

10) 조제분유의 Codex 기준은 ‘CODEX STAN 72: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11) 개정된 규정의 명칭은 「Administrative Order No.2006-0012: Revised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 of Executive Order No. 51 (약칭 RIRR)」

- 필리핀어와 영어, 두 개 언어로 ‘Important Notice’ 또는 ‘Government Warning’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아래의 내용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 모유 수유가 이상적이라는 문구
 - “이 제품이 모유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는 내용
 - 제품의 사용 필요성과 조제방법에 있어, 반드시 의료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문구
 - 적절한 조제 지침과 부적절한 조제에 의한 건강상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
 - “조제분유 및 기타 관련제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조제 및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비롯해 불필요한 상황에서 섭취했거나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 건강상 위험하다는 내용
- 조제분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에서 일반 영유아용으로 유통되는 식품이지만 가공 시 조제분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경우, ‘미가공 상태인 이 제품은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은 아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필리핀 보건부 규정인 「Department Circular No.2008-0006」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제분유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 일반 가이드라인
 - 필리핀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조제분유는 동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함
 -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문구사용은 라벨승인 거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질병, 장애 또는 특정 생리적 요건의 예방·완화·치료 또는 치유에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내용을 라벨(또는 다른 표시수단)에 단어·그림·기타 방법으로 기술하거나 나타내서는 안 됨
 - 할랄 인증 표시 가능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 표시면(principal display panel)’ 과 ‘정보 표시면(information panel)’ 으로 나누어 필수로 삽입해야 하는 항목을 명시함

〈표 IV-1〉 조제분유의 주 표시면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제품 및 브랜드명	1) 제품명은 CODEX 기준에 따라 ‘Infant Formula’, ‘Formula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 ‘Milk Supplement’ 또는 기준에 맞는 제품 명칭을 사용해야 함
		2) 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출처는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젖이 유일한 단백질원인 경우, 제품에 ‘Infant Formula Based on Cow’s Milk’ 라고 표시할 수 있음
		3) 우유 또는 우유과 생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contains no milk or milk products’ 또는 비슷한 문구 표시
		4) 브랜드명 및 상표에 ‘영양의(nutritional)’, ‘건강에 좋은(healthful)’, ‘최상의(superlative)’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거나 나열하면 공공정책에 위배됨

2	순합량	미터법(metric system)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 · 고형식품(조제분유 포함)은 무게로 표현
3	주요 메시지 삽입	1) (영어) 'BREASTMILK IS THE BEST FOR BABIES UP TO 2 YEARS OF AGE AND BEYOND' (필리핀어) 'ANG GARAS NG INA ANG PINAKAMABUTI PARA SA BATA HANGGANG 2 TAON O HIGIT PA' · 이 문구는 대문자의 굵은 글씨로 주 표시면 가장 상단의 중앙에 표시해야 하고 폰트는 'Arial', 사이즈는 라벨에 사용된 가장 큰 글자의 1/3 크기여야 함 2) (영어) 'IMPORTANT NOTICE: THERE IS NO SUBSTITUTE FOR BREASTMILK' (필리핀어) 'MAHALAGANG PAALALA: WALANG ANUMANG GATAS AND PWEDENG IPALIT SA GATAS NG ING' · 이 문구는 대문자의 굵은 글씨로 주 표시면 가장 하단의 중앙에 표시해야 하고 폰트는 'Arial', 사이즈는 라벨에 사용된 가장 큰 글자의 1/3 크기여야 함

<표 IV-2> 조제분유의 정보 표시면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성분목록	<p>1) 전체 성분목록은 포함된 비타민, 미네랄을 제외하고 함유율(농도)별 내림차순으로 표시해야 함</p> <p>2)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은 특정 고유명칭/화학명을 사용해 각각 별도의 그룹으로 표시해야 하며, 내림차순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p> <p>3) 모든 성분은 정보 표시면에 인쇄되어야 하고, 주 표시면과 정보 표시면 모두에 성분과 영양소 함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어서는 안 됨</p> <p>4) 동물 또는 식물유래 성분, 식품첨가물은 특정 명칭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성분은 적절한 보통명사(class name)로 라벨에 표시될 수 있음</p>
2	영양가 표시	<p>영양가 또는 영양정보 고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al 및(또는) kJ로 표시된 에너지양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함량은 100g당 함유량(g)을 명시해야 하며, 소비에 적합하다고 명시된 세부 분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함 · 조제분유의 경우, 기본 명시항목인 비타민, 미네랄, 콜린뿐만 아니라 CODEX 기준에 명시된 기타 추가성분의 총 함유량을 100g당 함유량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라벨의 지침에 따라 조제했을 시 소비에 적합하다고 명시된 세부분량과 함께 표시되어야 함 (100Kcal 또는 100KJ 당 표시도 허용)
3	유통기한 및 보관 설명서	<p>1) 유통기한 표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은 '일/월/년' 으로 연속 표시 ·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인 제품은 '월/년' 으로 표시 · '일' 과 '년' 은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 월은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문자로 표시해야 함 <p>2) 보관 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규정을 따라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보관 상태가 지침대로 유지되어야 유통기한이 유효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보관 지침은 유통기한과 인접한 곳에 표시되어야 함 · 올바른 조제방법 및 사용방법, 보관방법, 조제후 처분(수유 후 남은 분유를 버려야 하는 것) 등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라벨과 리플렛에 보이도록 해야 함 · 지침에는 부적절한 조제, 보관,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위험 경고를 삽입해야 함 · 뚜껑을 개봉한 이후에도 위생과 영양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보관지침을 알려야 함. 개봉 이후 보관을 하면 안 되거나 용기 안에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되는 경우, 라벨에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함 · 수유 후 남은 분유와 같이 조제 후 보관 및 폐기해야 하는 제품의 사용지침이 라벨에 언급되어야 함 · 용기를 개봉한 이후의 저장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침도 라벨에 언급해야 함

4	사용정보	<p>1) 제품의 준비와 사용, 저장, 용기 개봉 이후 보관방법에 대한 지침이 라벨에 언급되어야 함</p> <p>2)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벨에 사용지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조제분유와 같이) 분말형 및 농축액 제품의 경우 안전하게 조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미리 끓인 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저장 및 수유 후 남은 분유 등의 사용 후 폐기를 비롯해 올바른 준비와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침이 라벨에 명시되어야 하며, 라벨과 리플렛에 보이도록 해야 함 · 라벨에 조제방법을 설명하는 그래픽을 삽입해야 함 ·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신선한 자국산 천연식품을 보완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이러한 정보는 아래의 문구로 표현해야 함 <p>‘Infans six months onwards should be given fresh, indigenous, and natural foods in combination with continued breastfeeding’</p> <p>동 메시지는 굵게 인쇄되어야 하며 정보 표시면 가장 하단에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제분유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병원성 미생물이 함유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조제 및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불필요한 상황에서 섭취했거나 잘못 섭취했을 경우에 대한 건강상 위험성을 표시해야 함 <p>(영어) ‘THIS PRODUCT MAY CONTAIN PATHOGENIC MICROORGANISMS AND MUST BE PREPARED AND USED APPROPRIATELY’</p> <p>(필리핀어) ‘ANG PRODUKTONG ITO AY MAARING MAGKAROON NG MIKROBYONA NAGDUDULOT NG SAKIT AT DAPAT IHANDA AT GAMITIN NG TAMA.’</p> <p>아래와 같은 문구로도 작성할 수 있음</p> <p>(영어) ‘THERE IS LIKELIHOOD THAT PATHOGENIC MICROORGANISMS WILL BE IN THIS PRODUCT WHEN IT IS PREPARED AND USED INAPPROPRIATELY’</p> <p>(필리핀어) ‘ANG PRODUKTONG ITO AY MAARING MAGKAROON NG MIKROBYONA NAGDUDULOT NG SAKIT KAPAG HINDI TAMA ANG PAGHAHANDA AT PAG-GAMIT’</p> <p>위의 문구들은 모두 대문자로 굵게 표시되어야 하며, 정보 표시면 상단에 위치해야 함. 폰트는 ‘Arial’ 이며 사이즈는 라벨에 사용된 가장 큰 글자의 1/6 크기여야 함</p>
5	기업명 및 주소	생산, 포장/재포장, 유통, 수입, 수출기업의 완전한 명칭(Complete name) 표시
6	원산국	<p>1) 식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p> <p>2) 제2국에서의 가공으로 식품의 성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국으로 간주</p>
7	롯데식별	롯데식별번호는 라벨이나 용기에 새기거나(embossed)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함
8	식품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라벨에 나타내야 함
9	부차적인 문구	<p>정보표시 면에는 영어와 필리핀어로 다음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Use of Infant Formula/Milk Supplements must only be upon the advice of a health professional’ / ‘Ang Paggamit ng gatas na ito ay dapat sang-ayon sa payo ng Doctor o health professional’ · ‘The unnecessary and improper use of this product may be dangerous to your child’s health’ / ‘Ang maling paggamit ng gatas na ito ay maaaring makasama sa kalusugan ng bata’ <p>위의 문구는 굵은 글씨, 폰트는 ‘Arial’, 사이즈는 가장 큰 글자의 1/6 크기로 정보 표시면 가장 상단에 표시해야 함</p>
10	언어	라벨에 표시된 모든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어와 필리핀어 2가지 모두 사용할 수 있음

<그림 IV-1> 필리핀 조제분유 라벨 예시



* 출처 : <http://www.lazada.com.ph>

- 필리핀 식약청의 영유아 식품 유통기한 가이드라인인 「FDA REGULATION No. 001-C s. 1982」에 따르면, 조제분유 유통기한(Best before)을 라벨·포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아래의 기준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를 유통기한으로 정해야 함

<표 IV-3> 영유아식품 유통기한 표시 가이드라인

항목	기준한도
최대 수분량	3.5%
최대 비타민C 함유량	90% of label claim but not lower than 30mg/100mg sample
최대 용해도	80%

- 2004년에는 조제분유 라벨링 개정으로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breastmilk supplement’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할 것을 명시
- ‘follow-on formula’ 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제품은 모유대체품이 아님(This product is not a breastmilk substitute)’ 을 함께 명시해야 함
 - 분유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1단계/2단계/3단계 분유로 구분하는데, 2~3단계 분유는 이유기로 넘어가는 단계의 영유아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우유대체품으로 사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이유식품 사용 및 발달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가능
 - 필리핀 보건부는 2단계 분유를 의미하는 ‘Follow-on formula’ 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해당분유가 영유아에게 필수적이며 완전한 영양을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동 법규를 규정함

- 조제분유 및 유아 보충식품의 광고 가이드라인인 「Bureau Circular No. 15 s. 2004」¹²⁾에 의하면 라벨에 표현할 수 없는 사진과 이미지를 명시하고 있음
 - 영유아
 - 젖병 수유중인 여성
 - 젖병을 들고 있는 영유아와 여성
 - 젖병을 들고 있는 여성
 - 주 표시면: 젖병 자체(흰색의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
 - 포장 · 제품의 사진

3. 포장

□ 조제분유 포장규정 미비

- 조제분유 관련규정을 명시한 「Executive Order NO. 51」뿐만 아니라, 식품안전법 · 식품첨가물법 등에도 식품포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필리핀 GMP 규정인 「ADMINISTRATIVE ORDER NO. 153 S. 2004」에만 ‘식품 포장재는 안전하고 식품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13년 제정된 식품안전법 「REPUBLIC ACT NO. 10611(Food Safety Act of 2013)」에서는 식품안전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소비자 보호 등) CODEX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조제분유를 포함한 전 식품군에 사용되는 포장은 CODEX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조제분유의 CODEX 기준 「CODEX STAN 72: STANDARD FOR INFANT FORMULA AND FORMULAS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INTENDED FOR INFANTS」에서는 조제분유 및 영유아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영양소 함량 등을 규정

4. 인증정보

□ 식품인증 미비

- 필리핀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제품표준국(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이 수입상품 인증인 ICC(The Import Commodity Clearance)를 발급하고 있으나, 식품은 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필수인증 대상품목은 전기 · 전자제품, 건설자재, 화학제품 등에 한정됨

12) 본 규정의 명칭은 ‘Guidelines on Advertising, Promotion and Other Marketing Materials of Breastmilk Substitutes, Breastmilk Supplement and Other Related Products’

- 일부 식품의 경우 필리핀 국가표준(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s)이 마련되었으나, 식품은 필수인증 품목군이 아니며 표준이 마련된 식품의 종류도 제한적임

5. 수입규제

□ 조제분유는 고위험 식품으로 분류되어 까다롭게 규제

- 「Administrative Order No.2014-0029」에 따라 필리핀으로 식품을 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업면허(license to operate, LTO)와 제품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가 필요함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식품 수입을 위한 LTO를 취득해야 함¹³⁾
 - 식품수입업자는 기본 제출서류를 포함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견적송장, 에이전트계약서 등), 수출국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류(GMP, HACCP, 자유판매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전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을 반드시 진행하여 제품등록증명서(CPR)를 발급받아야 함
 - 식약청 산하 식품규정연구센터(Center for Food Regulation and Research, CFRR)의 전자등록시스템(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E-Registration)을 통해 제품등록을 신청해야 함
 - 현지 수입자, 대리인이 직접 진행
 - 제품등록은 수입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함
 - 필리핀 식약청은 위험도에 따라 식품을 3단계(저, 중, 고)로 나누어 등록요구사항, 구비서류 및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조제분유는 그 중 ‘고위험식품(High Risk Food Products)’으로 분류됨
 - 고위험식품의 경우 기본 제출서류를 포함해 분석증명서(Certificates of Analysis)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제품 등록신청 시 샘플테스트를 하지 않음¹⁴⁾

□ 수입통관 규정

- 「REPUBLIC ACT NO. 10611(Food Safety Act of 2013)」과 그에 대한 규칙인 「Joint DA-DOH Administrative Order No. 2015-0007」에서 ‘수입식품은 화물 검사 및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농림부와 보건부가 화물 도착(입국) 시점에 국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함

13) 영업면허(LTO) 발급절차 안내

(<http://www.fda.gov.ph/industry-corner/downloadables/224-food-establishment-licensing-requirements>)

14) FDA Memorandum Circular No: 2013-034 : Submissions of Samples of Food Products for Registration Purposes

- 본 검사는 관세국(Bureau of Customs, BOC)의 관세 및 기타 비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실시함
- 수입자는 제품이 입국항에 도착하기 전에, 식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농림부 및 보건부에 통지해야 함
 - 통지받은 당국은 제출된 서류를 보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위험도 분류에 따라 물리적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제분유는 일반적인 식품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 진행
 - 필리핀 정부부처가 연계된 단일통관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전 과정이 진행됨
 - 필리핀 세관은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세관검사(customs inspection), 관세분류(tariff classification), 관세평가(appraisement) 등을 진행하며, 수입에 따르는 각종 세금, 관세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 수출국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발급이 필수임
 -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수출국가의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수입 시에 제출해야 함

V. 홍콩

1. 생산기준

□ 조제분유의 정의 및 영양소 포함 기준

- 2015년 12월부터 발효된 홍콩의 식품안전규정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Amendment) (No. 2) Regulation 2014」에 유아용 조제분유에 관한 상세 규정이 추가되었음
- 영유아용 조제분유란 모유의 대체품으로 소비되도록 고안된 식품으로, 적절한 급식이 가능할 때까지 12개월 이하 모든 연령에 대해 영양적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을 의미함
 - 영유아용 포장식품이란 36개월 이하의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포장식품을 말함
 - 예외적으로 12개월 이상 연령대의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제품도 그 사용 지침에 따라 조제분유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의료목적의 특수분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식품안전규정 파트4(Part IV)에 CODEX 기준을 반영한 영양소 기준이 있음

2. 라벨링

□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및 조제분유 영양표시 규정 적용

- 포장식품 라벨링 규정은 「Schedule 3 to the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Regulations (Cap. 132W)」을 준수해야 함
- 영어, 중국어 또는 두 언어 모두 사용 가능
 - 영어와 중국어로 라벨의 내용 병기된 경우, 영양성분 표시도 두 언어 모두 병기되어야 함
 - 대문자, 소문자 또는 둘 모두 사용 가능

〈표 V-1〉 홍콩 일반식품 라벨링 규정

항목		세부 규정
1	식품명	1) 거짓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2) 소비자가 제품의 성질과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명칭이어야 함

2	성분목록	1) ‘성분(Ingredients)’, ‘구성(Composition)’, ‘내용물(Contents)’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명해지는 경우, 식품이 포장된 시점의 성분 무게 또는 부피별 내림차순으로 나열되어야 함
		2) 8가지 알러지 유발성분이 함유된 경우, 아래와 같이 그 포함 사실을 명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루텐을 포함한 시리얼 · 감각류 및 감각류를 포함 제품 · 계란 및 계란을 포함한 제품 · 생선 및 생선을 포함한 제품 · 땅콩, 콩 및 이들의 제품 · 우유 및 유제품(유당포함) · 견과류 및 견과류제품 · 10ppm 또는 그 이상의 농축된 아황산염(sulphite)
		3)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채택한 식품첨가물의 국제번호체계(International Numbering System for Food Additives) 상의 식별번호 또는 명칭과 기능적 분류를 기재해야 함
3	유통기한	아래의 문구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유지하도록 보관가능한 기간을 나타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e by(此日期或之前食用)’ · ‘best before (此日期前最佳)’
4	보관·사용지침	보관을 위해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거나, 식품소비를 위한 특이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5	기업명 및 주소	식품 제조업자, 포장업자 또는 기타 관련업자의 이름과 주소 표시
6	내용량 및 중량	순중량, 순부피, 개수 등 숫자로 나타낸 내용량의 수치가 표시되어야 함

- 식품안전규정 「Food and Drugs (Composition and Labelling) (Amendment) (No. 2) Regulation 2014」의 「Schedule 6A: Nutrition Labelling of Infant Formulae」에 조제분유의 영양표시 라벨링 규정이 있음

〈표 V -2〉 홍콩 조제분유 영양표시 라벨링 규정

세부 규정

- 1) 조제분유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영양성분 목록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
- 에너지 값
 - 아래의 목록에 있는 29종 영양소 중 포함된 것의 함유량

프로틴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A	비타민D3	셀레늄
비타민B6	비타민B12	판토텐산	엽산	비타민C	구리
나트륨	엽화물	칼륨	망간	요오드	아연
비타민E	비타민K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콜린
비오틴	철	칼슘	인	마그네슘	

- 2) 조제분유에 포함된 플루오르화물(fluoride)이 100Kcal당 100 μ g 또는 100KJ당 24 μ g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내용의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이 조제분유의 섭취는 치아불소증(dental fluorosis)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치아불소증의 위험은 의료전문가 또는 건강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표시해야 함
- 3) 1)의 목록에 규정된 영양소 외에 제품에 포함된 기타영양소도 그 함유량을 표시해야 함
- 4) 이 외 제품과 관련한 기타 영양학적 또는 식이학적 정보가 함께 표시될 수 있음

- 5) 에너지 값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함
 - 100g당 Kcal 또는 KJ
 - 100ml당 Kcal 또는 KJ
- 6) 1)의 목록에 규정된 영양소의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함
 - 100g당 g 또는 기타 적절한 단위
 - 100ml당 g 또는 기타 적절한 단위
- 7) 기타영양소 함유량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함
 - 100Kcal당 기타 적절한 단위
 - 100ml당 기타 적절한 단위
- 8) 이 영양성분 목록은 포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적절한 제목을 달고 표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함
 - 총 면적이 200cm²이하인 경우, 선형의(Linear) 형식으로 제시될 수 있음
- 9) 이 표시는 영어, 중국어 또는 두 언어를 병기할 수 있으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야 함

<그림 V-1> 홍콩 조제분유 라벨 예시



* 출처: <https://www.hktvmall.com>

3. 포장

□ 조제분유 포장재의 규격에 관한 규정 미비

- 홍콩은 포장 또는 용기에 대한 특별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조제분유 개별의 포장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식품안전규정상 조제분유의 라벨링 규정 하단에 포장에 ‘모든 조제분유는 250cm² 이하의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4. 인증정보

□ 식품인증 미비

- 조제분유 및 수입식품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은 없음
- 수입되는 제품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나, 조제분유의 경우에는 담당 인증부서가 없음
- 식품환경위생국(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epartment, FEHD)에서는 홍콩 내 유통되는 식품안전 인증을 담당하는데, 이는 식품 생산공장, 보관창고 및 식당에 관한 인증임

5. 수입규제

□ 조제분유의 수입과 관련한 규정 미비

- 가루분유(Powdered Formula)의 수출입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수출통제가 주된 내용임
- 홍콩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표방하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제재가 적은 편이지만, 홍콩 내 분유 품귀현상으로 가루분유의 수출에 대해서는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가루형태의(in powder form)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며, 액상분유는 규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36개월 이하의 연령대가 소비하는 가루분유(Powdered Formula)는 「Import and Export (General) Regulations (Cap. 60, subsidiary legislation A)」에 의해 수출허가(Export Licence)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함
- 규정의 명칭과 달리 수출통제가 주된 내용이며, 조제분유의 수입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수입통관 규정

- 홍콩 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가 무역에 대한 관리, 수출입품의 법령 준수여부 점검, 무역정책 등을 실행하고 있음
- 식품수입업자 등록 및 관련기록 유지의무
 - 식품 수입업 종사자는 「Food Safety Ordinance (Cap. 612)」에 따라 식품환경처(Director of Food and Environmental Hygiene, DFEH)에 식품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함
 - 등록된 식품수입업자는 식품 취득일자, 구입처 정보, 원산지, 물량 등과 같은 식품의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음
- * 식품환경처 - 공공양식 - 식품 수입 및 유통업자로의 등록 신청서 (<http://www.fehd.gov.hk/english/forms/fehb245.html>)

<참고> 국가별 모니터링 사이트 목록

(1) 사우디아라비아

구분	기관	모니터링 URL
생산기준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걸프지역표준화기구)	https://www.gso.org.sa/gso-website/?lang=en
	Saudi Food&Drug Authority (식약처)	https://www.sfda.gov.sa/en/food/about/administration/management_regulations/pages/regulations_standards-project.aspx
라벨링	Saudi Food&Drug Authority (식약처)	https://www.sfda.gov.sa/en/food/about/administration/management_regulations/pages/regulations_standards-project.aspx
포장		
인증정보	-	-
수입규제	Saudi Food&Drug Authority (식약처)	https://frcs.sfda.gov.sa/Account/RegisterAccount.aspx

(2) 캄보디아

구분	기관	모니터링 URL
생산기준	National Trade Repository (무역 저장소)	http://www.cambodiantr.gov.kh/kcfinder/upload/files/Prakas%20No.%201045%20ISC%20CS001-2000%20Labelling%20of%20Food%20Product%20-%20EN.pdf
라벨링	CODEX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sh-proxy/fr/?lnk=1&url=https%253A%252F%252Fworkspace.fao.org%252Fsites%252Fcodex%252Fstandards%252FCODEX%2B2B72-1981%252FCXS_072e.pdf
포장	-	-
인증정보	-	-
수입규제	Camcontrol (캄컨트롤)	http://www.camcontrol.gov.kh

(3) 말레이시아

구분	기관	모니터링 URL
생산기준	Food and Safety Division, Ministry of Health Malaysia (식품안전및품질부)	http://fsq.moh.gov.my/v5/ms/food-regulations-1985-2/
라벨링		
포장		
인증정보	-	-
수입규제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식품안전정보시스템)	fsis2.moh.gov.my/fosimv2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관세청)	http://www.customs.gov.my/

(4) 필리핀

구분	기관	모니터링 URL
생산기준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	http://www.fda.gov.ph/issuances/29029-executive
라벨링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	http://www.fda.gov.ph/issuances/29029-executive
포장	CODEX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sh-proxy/fr/?lnk=1&url=https%253A%252F%252Fworkspace.fao.org%252Fsites%252Fcodex%252FStandards%252FCODEX%2B72-1981%252FCXS_072e.pdf
인증정보	-	-
수입규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식약청)	http://www.fda.gov.ph/issuances-2/food-laws-and-regulations-pertainin-g-to-all-regulated-food-products-and-supplements/food-memorandum-circular/246230-reiteration-of-new-requirements-for-certificate-of-p-product-registration-based-on-administrative-order-no-2014-0029-and-fda-circular-no-2014-029

(5) 홍콩

구분	기관	모니터링 URL
생산기준	Centre for Food Safety (식품안전센터)	http://www.cfs.gov.hk/english/
라벨링	Government Logistics Department (물류부)	http://www.gld.gov.hk/egazette/pdf/20141824/es22014182490.pdf
	Centre for Food Safety (식품안전센터)	http://www.cfs.gov.hk/english/
포장	-	-
인증정보	-	-
수입규제	Centre for Food Safety (식품안전센터)	http://www.cfs.gov.hk/english/food_leg/food_leg_driedmilk.html#driedmilk_reg4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무역산업부)	http://www.tid.gov.hk/english/import_export/nontextiles/powdered_formula/pf012013.html